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IGNITY, FREEDOM & JUSTICE FOR ALL



사진: 1972년 남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김점순 씨(82세).
부산의 자택에 남편과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2013.10.28 © Reuters 김홍지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목 차

- I 서문 / 4
- II 방법론 / 5
- III 법적 체계 / 7
- IV 실종 배경 / 12
- V 강제실종이 피해자에 미친 영향 / 23
- VI 강제실종으로 인해 겪은 침해에 대한 진실,
책임 규명을 비롯한 정의,
배상에 관한 피해자 견해 / 35
- VII 결론 / 49
- VIII 권고 / 50

의견 청취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명단 / 55

I. 서문

1. 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및 해당국에 의해 자행된 강제실종에 이를 수 있는 인권 침해 혐의를 조명한다.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48/141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에 부여된 위임권한에 의거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른다. 인권이사회 결의 25/25가 부여한 위임권한에 따라 현장사무소는 책임 규명 보장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을 강화하고,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며, 지속적인 소통, 옹호활동 및 지평 확대 노력을 통해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의 가시성을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제 납치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및 해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혐의는 유엔 인권 기구에 의해 상당수 기록되고 있다. 201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른 국가에서 자행한 국가 주도 납치 및 강제실종의 강도, 규모, 본질이 유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¹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해당국의 정치 체제 및 지도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이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해당국을 이탈한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렇듯 체계적인 공격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체계적인 납치, 송환 거부, 타국에서의 강제실종을 국가 방침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일삼는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이른다고 결론 내렸다.
3. 본 보고서는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포함한 강제실종 및 납치 피해자들의 지속되는 고통을 살핀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한 내용에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는 진실 규명, 정의 실현 메커니즘, 배상에 관한 피해자의 견해를 담았다. 이와 더불어 강제실종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파와 여성 및 아동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4.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인권이사회 결의 34/24, 40/20 및 46/17에 의거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A/HRC/25/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과 상세보고서(A/HRC/25/CRP.1)(조사위원회상세보고서) 참조.

II. 방법론

5.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강제실종 피해 남성 38명 및 여성 42명과 진행한 총 80건의 심층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면담 대상자로는 강제실종자의 친인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되어 이후 탈출한 타국 국민 등이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여러 측면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피해자와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반영하고자 했다. 다만, 면담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거나 사망한 점이 제한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강제실종 피해자가 겪은 모든 영역의 침해 행위를 빠짐없이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모든 피해자의 견해를 전부 반영할 수도 없다.
6.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초부터 (여성이 이끄는 단체를 포함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일련의 의견 청취 활동을 진행하고 본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서면 질문지 작성을 요청했다.² 간담회와 질문지를 통해 강제실종으로 인한 지속적인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책임 규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법적 책임 규명 접근 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본, 대한민국, 루마니아, 태국에서 활동하는 19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일본 및 대한민국 정부에 질문지를 전달했다. 또한 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자료와 기타 공개된 정보를 검토했다.
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행한 모든 면담 및 간담회에서 표준 관행 및 방법론을 따랐는데,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조사 시 “해를 끼치지 않는다(do no harm)”는 원칙과 “피해자/생존자 중심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 시 젠더 및 나이를 고려한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정보원(情報源)의 비밀을 유지하고 면담 전후를 비롯한 전 면담 과정에서 모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면담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면담 시 수집한 정보를 공개 보고서에 사용해도 된다는 사전동의를 받았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제실종 및 기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와 진술을 입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의 신뢰도와 신빙성, 전달받은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여타

² 인권이사회 결의 46/17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및 기타 유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련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평 확대 활동을 해 나가도록 요청한다.

출처를 통해 취득한 정보와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 발간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본 보고서를 전달했다.³ 또한 중국, 일본,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서 중 해당국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전달했다.⁴

³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설대표부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한 정부 답변, 2023년 2월 6일.

⁴ 주 제네바 유엔 사무소 및 스위스의 기타 국제기구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부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한 외교공한을 통한 정부 답변, 2023년 1월 3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 및 기타 국제기구 주재 일본 대표부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한 외교공한을 통한 정부 답변, 2023년 1월 16일;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달한 외교공한을 통한 정부 답변, 2023년 1월 16일.

III. 법적 체계

10. 본 보고서에 기록된 강제실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인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당사국이다.⁵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강제실종”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강제실종은 삶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규정된 다양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 조합이다. 자유를 박탈한 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생사를 은폐할 경우, 실종자는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강제실종은 결과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 및 제16조(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위반한다.⁶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강제실종 실무그룹”)⁷에 의하면 강제실종은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또는 국가의 직간접적 지원, 허가, 묵인을 받아 행동하는 조직이나 민간인이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체포, 구금 또는 납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들의 생사 또는 소재를 공개하거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이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또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이 ‘괴로움과 슬픔’을 (중략) 가족에게 일으키며 이러한 고통은 고문의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친인척은 이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는다고 지적했다.⁹ 여기서 핵심 관건은 바로 강제실종이 “전형적인 지속적인 행위”¹⁰라는 점이다. 즉, 강제실종 범죄는 실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구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¹¹ 지속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9월 14일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가입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1997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을 탈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규약에 탈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엔 사무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논의 후 탈퇴 통보에 관한 법적 입장을 표명하는 비망록(aide-mémoire)을 전달했다. 해당 비망록에 기술되어 있듯, 사무총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탈퇴는 “해당 규약 당사국 전원이 탈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CCPR/C/GC/36, 문단 58; CCPR/C/113/D/2000/2010, 문단 11.3.

7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5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위임권한에 따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과 연관된 문제를 살핀다. 이는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이들의 가족을 도와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 확인을 돕는 일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그룹은 2010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시작된 강제실종 사례나 해당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내 강제실종 사례도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

8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1992년 12월 18일 총회 결의 47/133으로 채택.

9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강제실종과 관련한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문단 4, A/HRC/16/48, 2011년 1월 26일.

10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지속적인 범죄로서 강제실종에 관한 일반논평, 문단 1, A/HRC/16/48, 2011년 1월 26일.

11 상동.

11.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상 의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의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강제실종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생사와 소재를 밝히기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¹² 체계적인 강제실종 관행은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¹³ 더하여 강제실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강제실종 금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수사와 처벌 의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여겨진다.¹⁴
12. 6·25전쟁 중 납치된 민간인과 전쟁 이후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의 경우, 1949년 채택된 4개 제네바협약 및 기타 원칙과 관습법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과 관련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6·25전쟁 초기에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양국 모두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다.
13. 제네바협약 제3협약 및 제4협약은 각각 중대한 위반 행위에 국군포로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4협약은 “불법으로 추방 이송 또는 구금하는 것 (중략) [및] 인질로 잡는 것”¹⁵ 또한 민간인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¹⁶고 명시하며 구체적인 송환 절차를 기술한다.¹⁷ 제네바협약 제3협약은 해당 정부와 가족이 국군포로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총돌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¹⁸ 실종자 소재 확인에 대한 국제인도법상 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규범이다.¹⁹
14. 국제 인권 조약은 인권 침해 피해자가 구제 및 시정조치(redress)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은 국가로 하여금 권리를 침해 당한 모든 이에게 효과적 구제방안을 보장하도록 한다. 해당 침해 행위가 공무원행 중인 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

¹²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CCPR/C/GC/36, 문단 58.

¹³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10년 12월 23일 발효 (강제실종방지협약), 제5조: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강제실종 관행은 적용가능한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며, 해당 적용가능한 국제법상 규정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중략) 제7조 제2항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2002년 11월과 2007년 7월에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

¹⁴ 미주인권재판소, *Goiburú and others v. Paraguay* 사건, 2006년 9월 22일, 문단 84; 강제실종방지협약 제9조; 국제군사재판소(뉘른베르크), 1946년 10월 1일 판결 참조. 강제실종 범죄는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다. 판결은 ‘밤과 안개(Nacht und Nebel)’ 명령을 참고로 하여, 주민 및 영향 받는 집단에게 공포를 조성할 의도로 사람을 비밀리에 구금하는 것은 반인도범죄이자 전쟁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¹⁵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제147조.

¹⁶ 제네바협약 제3협약, 제118조.

¹⁷ 상동, 제119조.

¹⁸ 상동, 사망 관련 제121조, 국가정보국 관련 제122조;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4조 제3항: “각 당사국은 실종자 수색, 소재 확인, 석방 및 실종자가 사망한 경우 유해의 소재 확인, 예우, 송환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종자 수색에 관한 이행원칙, CED/C/7, 제2원칙의 4,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족이 원할 경우, 국가는 실종자의 신체 또는 유해를 가족이 선택한 매장지로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다른 국가로의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이전을 포함한다.” 참조.

¹⁹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관습법으로 여기는 국제인도법 규칙 제117조, “각 총돌 당사국은 무력 충돌의 결과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모든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실종자 생사에 관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실종자 가족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²⁰ 더하여 국가는 구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이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당국은 인정된 모든 구제조치를 집행해야 한다.²¹ 이외에도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인권 조약들이 있다.²²

15.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강제실종자 친인척도 고문의 피해자이기에 강제실종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²³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의하면 강제실종자 가족도 명백한 피해자다. 해당 협약에 의하면 “피해자란 실종자 및 강제실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²⁴
16.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이하 “기본 원칙”)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합의 내용이다.²⁵ 기본 원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모든 피해자는 사법제도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침해 행위와 배상 메커니즘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한다.²⁶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심리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상당한 손상”²⁷을 입었을 수 있다.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입을 시도한 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알 권리

17. 중대한 인권 침해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인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효과적 구제 및 배상 방안을 보장할 국가의

²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조 제3항 (a).

²¹ 상동, 제2조 제3항 (c).

²²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1987년 6월 26일 발효, 제14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 1965년 12월 21일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989년 11월 20일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 참조. 국제인도법 관련조항으로는 1907년 10월 18일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제4협약) 제3조; 1977년 6월 8일의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91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8조 및 제75조 등이 있다.

²³ CCPR/C/113/D/2000/2010, 문단 11.7; CCPR/C/119/D/2259/2013, 문단 7.8.

²⁴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4조 제1항. 일본은 2009년 7월 23일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했다. 대한민국은 2023년 1월 4일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2023년 2월 3일 대한민국에서 강제실종협약이 발효되었다.

²⁵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기본 원칙), 총회 결의 60/147, 2005년 12월 16일.

²⁶ 상동, 제11조.

²⁷ 상동, 제8조.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해당 권리는 국제법상 다수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²⁸ 이는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강제실종자 생사, 실종 행위의 정황 및 가해자 신원에 대해 알 권리를 수반한다.²⁹ 국가는 가족과 친인척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강제실종자의 행방 및 수사 과정에 관한 정보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³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6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관련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생명의 박탈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건 관련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생명의 박탈이 발생한 도중 및 전후로 국가 권력이 취한 절차에 관한 진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더했다. 또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³¹ 강제실종 사건의 경우, 국가는 해당 작위 및 부작위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친인척이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³² 강제실종 실무그룹 또한 수사의 의무는 강제실종의 지속성 및 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명시했다.³³

사법 접근권

- 18.** 강제실종을 구성하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권한 있는 법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 구제방안에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는 법정에 책임 있는 이들을 세우기 위한 범죄 수사도 포함된다. 인권 침해행위는 권한 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수사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이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지위(legal standing)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더해 수사 과정 및 수사에 따른 결과, 결론, 권고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때 공익 보호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개인의 사생활과 여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증인, 피해자, 이들의 친인척과 수사 관계자를 위협, 공격 및 모든 형태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생명권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³⁴ 나아가 국가는 강제실종이 충분한 형사제재를 통해 처벌 받도록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 사법제도 내에서 작동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가 실종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²⁸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3조.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해당 권리를 제1추가의정서 채택 이전에 존재한 관습법으로 해석한다. 해당 권리는 “무력충돌의 결과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실종자 생사에 관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실종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국제인도법 규정에서 유해의 발굴, 감식 및 예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4조 제2항; 불처벌 반대를 통한 인권보호증진 원칙(E/CN.4/2005/102/Add.1);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강제실종과 관련한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E/CN.4/2006/91, 2006년 2월 8일, 참조.

²⁹ E/CN.4/2006/91.

³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강제실종과 관련한 진실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A/HRC/16/48, 문단 39.

³¹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CCPR/C/GC/36, 문단 28.

³² 상동, 문단 58.

³³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지속적인 범죄로서 강제실종에 관한 일반논평, A/HRC/16/48, 문단 39.

³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CCPR/C/GC/36, 문단 28.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³⁵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는 특히 중요하다.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활용가능한 구제방안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의거한 피해자 및 증인 보호 조치를 취하며,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0.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강제실종과 같이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³⁶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강제실종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강제실종방지협약 당사국은 시효를 길게 적용하고 “해당 위법행위의 극도의 심각성”³⁷에 비례하도록 해야 하며, “강제실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위법행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³⁸ 시효를 개시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도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배상

21.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repar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³⁹ 이는 피해의 중대성을 반영해야 한다. 배상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국가나 책임 있는 개인이 제공할 수 있다. 배상은 물질적 배상, 금전적 배상, 그리고 사죄나 기념비 건립을 통해 피해자 고통을 인정하는 등의 상징적 배상이 있다. 기본 원칙은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와 대표적인 배상 유형을 명시하는데, 원상회복, 보상(compensation), 재할, 만족, 재발 방지 보장이 있다.⁴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해당 규약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⁴¹ 강제실종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⁴²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도 배상을 피해자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⁴³

³⁵ 상동, 문단 58.

³⁶ 기본 원칙, 제6조.

³⁷ 강제실종방지협약, 제8조 제1항 (a).

³⁸ 상동, 제8조 제1항 (b).

³⁹ 기본 원칙, 제2조 (c).

⁴⁰ 상동, 제18조.

⁴¹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CCPR/C/21/Rev.1/Add. 13, 문단 16.

⁴²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9일, 일본은 1999년 6월 29일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⁴³ 강제실종방지협약 제 24조 제5항;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9조 제5항 및 제14조 제6항;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항;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5조 제1항.

IV. 실종 배경

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본 보고서가 다루는 강제실종 및 납치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지속된 관행으로 파악되는 강제실종으로, 이는 국민이 이웃 국가에서 강제 송환된 뒤 해당 강제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를 숨기는 사례도 포함한다. 두번째 유형은 주로 195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외국인의 강제실종이다. 이는 6·25전쟁 도중과 이후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 미 송환 국군포로, 일본 및 다른 국가에서 납치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한 보고서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상낙원” 복송사업도 다루는데,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그리고 이들의 일본인 배우자 일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약속을 믿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

가. 송환 이후 강제실종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강제실종

2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강제 실종을 구성할 수도 있는 지속적 관행이 보고되는 점에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⁴⁴ 피해자 중에는 정치 범죄 혐의를 받고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려고 시도하다 강제 송환되어 구금된 이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외부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구금 당하며, 정치범 수용소 뿐 아니라 일반 수감 시설 내에서도 고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는 즉결처형을 당하고, 가족에게는 사망사실 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제실종자 가족이나 간신히 이탈한 자들의 가족도 연좌제로 인해 가혹한 보복이나 강제실종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⁴⁵
24.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과거 수감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남은 가족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익명을 요구했다. 일부 면담대상자는 친인척이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호소했다. 면담대상자 대부분은 친인척의 구금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당국이 구금 이유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 면담대상자는 부인과 아들이 서로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은 통보 받았으나, 어느 수용소 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⁴⁴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0년 7월;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698; KOR/21/0039; KOR/21/0040; KOR/18/0033; KOR/21/0029; KOR/16/0082; KOR/16/0089. 인용 대상이 "KOR"로 시작하는 경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진행한 면담을 관리하는 분류 체계를 지칭한다.

⁴⁵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745, 752-53, 1080.

“2000년 8월에 남편이 복송되었다. (중략) 남편이 비밀처형 당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친척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 2년 좀 넘어서 비밀처형 소식을 알게 됐고, 보위부[국가보위성]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다.”⁴⁶

“그들[부인과 아들]이 서로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들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은 이제 4년 형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여전히 전혀 소재를 알지 못한다. 이는 즉 아들이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거나, 구금 중 사망했다는 뜻일 수 있다.”⁴⁷

25. 면담대상자 다수는 당국에 뇌물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공식 경로를 통해 구금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탈자인 이한별 씨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오빠인 이세일 씨는 2009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송환되었다. 이한별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오빠는 건너간 후 중국에서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다. (중략) 다음날 송환되어, 량강도 혜산 국가보위성에 넘겨졌다. 나중에 듣기로는 오빠가 (중략)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했는데, 이는 관리소였다. (중략) 오빠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오빠의 아내가 국가보위성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2015년까지는 살아있다고 들었으나, 이후 우리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⁴⁸

26. 강제실종은 일반 수감 시설 내에서도 발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체포 당한 이의 가족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사유 및 구금 장소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일반 수감 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거나 가족이 구금되었던 몇몇 면담대상자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수감자의 생사 및 소재 공개를 거부하거나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강제실종의 구성요건이다.

나. 외국인의 강제실종 및 납치

6·25전쟁 중 납치

27. 6·25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민간인을 납치하여 북으로 이주시켰다(전시 납치피해자). 납치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노려 납치대상으로 삼았다. 대한민국에서 붙잡혀 강제로 끌려간 민간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의하면, 6·25전쟁 중

46 KOR/21/0040

47 KOR/16/0082

48 KOR/21/0029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은 대략 9만 5456명에 달한다.⁴⁹

28.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전시 납치피해자들의 가족과 만났는데, 대부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실종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최광석 씨는 89세에도 여전히 부친 최준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부자는 1950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에 의해 동대문 정치 보위부에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 최광석 씨는 부친이 고문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⁵⁰ 최광석 씨는 닷새 간 구금 후 풀려났으나, 부친의 행방은 영영 알아내지 못했다. 최광석 씨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보러 갔다. 아버지는 기진맥진 하고 있었고, 누울 자리도 없이 기대어 있었다. 이때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이다. ‘아버지, 나 집에 가’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잘 가라’고 하셨다. 당시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할머니랑 엄마 모시고, 동생 넷 데리고 잘 살아라’고 하셨다.”⁵¹

29.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최준 씨를 비롯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전시 납치피해자 대부분은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송환 국군포로

30. 6·25전쟁 정전 무렵에 수만 명의 국군포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해당국의 동맹국에 잡혀 있었다.⁵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8343명의 국군포로만을 송환했다.⁵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 문제가 정전 협정 당시에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⁵⁴ 조사위원회는 최소 5만 명의 대한민국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⁵⁵ 대략 500명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1994년부터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2021년 이후 이 중 6명이 사망하여 현재 14명만이 생존 중이다.⁵⁷
3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국군포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쪽 지역의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차별과 감시를 당했다. 국군포로의 자녀도 고등교육 접근에 차별을 받았고, 자녀 중 아들은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면담대상자들이 인권

4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영문), 2017, 110쪽, https://www.abductions625.go.kr/resources/adc625/img/ebook/625_rpt_eng/index.html. 위원회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에 의거하여 전시 납치피해를 조사하고 납치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50 최광석 씨는 1950년 9월 13일 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이 아버지를 감방에서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다.

51 KOR/21/0035

52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861.

53 대한민국 통일부, 2022년 통일백서(영문), 132쪽.

54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882; 대한민국 통일부, 2016년 통일백서(영문), 127쪽.

55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862.

56 상동, 문단 863, 각주 1313. 2023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추정치는 2010년 기준이다.

5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2(국문), 539-40쪽.

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국군포로의 딸은 결혼하여 출가할 경우 탄광을 벗어날 수 있었으나, 아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국군포로의 딸인 손명화 씨는 부친을 언제나 술을 마시고 홀로 눈물을 흘리며 우울해 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손명화 씨가 어릴 당시에는 부친이 항상 우는 이유를 몰랐으나, 부친은 사망 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렸다. 여타 국군포로 가족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북에서 ‘괴뢰군 새끼,’ ‘괴뢰군 43호’로 불리었다. 괴뢰군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살았다. 사회적으로 어떤 테두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지고 성장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⁵⁸

“북에서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사회적 연좌제로 나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 밖에 알지 못하고 자랐다. 바깥의 환경을 전혀 몰랐다.”⁵⁹

6.25 전쟁 이후 납치

32. 대한민국 통일부에 의하면, 1953년 정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3835명을 납치(전후 납치피해자)했고, 이 중 3310명은 이후 송환하였다.⁶⁰ 대한민국 정부는 516명의 전후 납치피해자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후 납치피해자 9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다. 전후 납치피해자 대부분은 해상에서 조업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어민이었다. 1969년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되었다. 46명의 여객기 승객 중 39명은 풀려났으나,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해당국은 주장했다.⁶¹ 또한 1977년부터 1978년 사이 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 흥도 및 전라북도 군산에서 다섯 명의 고등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군인과 경찰 30명이 납치되었으며,⁶² 12명의 대한민국 민간인이 해외에서 납치되었다.⁶³ 이러한 납치사건 대부분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발생했으나, 2016년까지도 이어진 바 있다.⁶⁴

33. 전후 납치피해자 중 소수만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어민 9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귀환하였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중 5

⁵⁸ 2022년 9월 6일 국군포로 가족 간담회 기록, 국군포로 가족은 “43호”로 지정되었다.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289 참조.

⁵⁹ 2022년 9월 6일 국군포로 가족 간담회 기록.

⁶⁰ 대한민국 통일부, <https://reunion.unikorea.go.kr/>;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영문) 2021, 618-19쪽.

⁶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1(영문), 625쪽, 각주 1228.

⁶² 대한민국 통일부, 2022년 통일백서(영문), 133쪽.

⁶³ 오스트리아, 중국, 독일과 노르웨이에서 납치되었다.

⁶⁴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884-906,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되었거나 해당국 내에서 강제실종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A/70/393, 문단 6 참조.

명과 면담을 진행하고, 납치 당시 정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한 납치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 분노, 외로움 및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잡혀 있는 동안 고향에 돌아오거나 대한민국의 가족과 소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1968년 당시 어민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되어 40년 후 귀환한 윤능산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처음 납북되었을 때 남으로 가고 싶다는 요청은 납북된 우리 모두가 했다. 밥도 안 먹으면서 굶어가면서 때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북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심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밥도 먹지 않고 되돌려 보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고 (중략) 나도 몇 번 죽자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⁶⁵

34. 귀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부는 공작원 훈련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 후 납치피해자들은 해당국 내 각기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어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다. 이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일들을 묘사했다. 이들의 자녀는 교육 및 취업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남은 가족도 자국 정부의 감시를 받았다.

“북에서 우리를 데려간 것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간첩으로 양성해서 남측에 다시 침투시키려고 한 목적이었다. 김일성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나도 연락소 생활을 했다. (중략) 대동강 213 훈련소(연락소)에서 훈련을 [했다].”⁶⁶

“[첫]날부터 보위부, 안전부,⁶⁷ 인민반장, 열성 분자 등이 미행을 했고, 하루 종일 우리 가족 모두가 감시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다. 굶는 것보다 감시와 구속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것이 북의 인권이다. 내가 북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원할 것 없는 나를 붙잡아서 술한 사람을 고생시켜 감시한 것이다.”⁶⁸

35. 귀환자들은 가족과 기쁘게 상봉한 일을 묘사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던 괴로움을 아직까지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어민이었던 윤능산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한에 와보니 고향(중략)에는 백 살 된 어머니만 살고 계셨고 형님 둘은 모두 사망했다. (중략)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들을 오랜 기간 볼 수 없었으니 애가 탔을 것이 분명하다. 귀도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라 처음에는 나를 잘 못 알아보셨는데 열흘 정도 생활하니 기억이 조금씩 나시는 것 같았다.”⁶⁹

36. 2006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납치피해자 및 국군포로를 지칭할 때 “전쟁시기 및 그 이

65 KOR/21/0033

66 상동.

67 사회안전성을 의미한다.

68 KOR/21/0033

69 상동.

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가족 이산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⁷⁰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석을 신청한 가족들을 대표하여 400명의 납치피해자 및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했다.⁷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33명의 생사만 확인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⁷² 2000년 이후 납치피해자 및 국군포로의 60가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하여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났다.⁷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남은 가족이 사망했으나 그 자손이 대한민국의 친인척을 처음으로 만난 사례도 일부 있었다.⁷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⁷⁵

일본 국민의 납치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 국민을 여러 명 납치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일본 국민 13명의 납치 사실을 시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이 서명한 선언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겠다고 확인했으며, 5명의 납치피해자를 일본으로 돌려보냈다.⁷⁶ 해당국은 납치피해자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제공 받은 정보가 이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여겼다.⁷⁷ 일본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일본 국민을 17명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중 4명의 해당국 입국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에 귀환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871명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⁷⁸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강제실종 사건은 일본 국민 납치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송환한 5명의 피해자 외에 더 이상의 납치피해자를 송환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의 생사 및 소재와 관련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전히 다자

⁷⁰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남북당국간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계기시에 국군포로와 납치피해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09년 처음으로 국군포로 1명과 납치피해자 2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통일부, 2010년 통일백서(영문), 118-119쪽; 대한민국 통일부, 정부의 노력, <https://reunion.unikorea.go.kr/abduct/html/effortRelations.html> 참조.

⁷¹ 2022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통일부 제공 정보.

⁷² 대한민국 통일부, 2019년 통일백서(영문), 224쪽.

⁷³ 상동.

⁷⁴ 2022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통일부 제공 정보.

⁷⁵ 2022년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세 지도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www.mofa.go.jp/files/100421322.pdf>

⁷⁶ 조일평양선언, 2002년 9월 17일,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pmw0209/15pyongyang.html

⁷⁷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http://www.rachi.go.jp/en/p-en2022.pdf>

⁷⁸ 상동, 3쪽. 또한 민간 시민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는 470건의 실종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http://www.chosa-kai.jp>



200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납치 관련 집회 모습
© EPA 연합뉴스

간 정상회담 및 다른 국가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⁷⁹ 납치피해자 가족들도 친인척의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해온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39. 다구치 야에코 씨는 197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되었다. 해당국은 다구치 씨가 30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사망에 관한 어떠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⁸⁰ 다구치 씨의 오빠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2021년에 사망했는데, 그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여동생의 소재를 정말 알고 싶고, 건강한지 아픈지도 궁금하다. 여동생의 사진을 간절히 보고 싶다. 사진을 정말 간직하고 싶다.”⁸¹

40. 이시오카 도오루 씨는 1980년 유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유인 당했다. 아리모토 게이코 씨도 1983년 유럽에서 해당국으로 유인 당했는데, 이시오카 씨와 결혼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2년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아리모토 씨, 이시오카 씨와 이들의 자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⁸² 아리모토 씨의 모친으로 2020년에 사망한 아리모토 가요코 씨는 조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납치피해자를 모두 송환해야 한다. 공식 인정된 납치피해자 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납치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도 모두 송환해야 한다.”⁸³

⁷⁹ 예를 들어, 2022년 5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이들의 가족들은 조셉 R.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https://www.rachi.go.jp/en/archives/2022/0523meeting.html>; 2019년 5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이들의 가족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5001.html, 2022년 10월 21일 일본 정부 제공 정보.

⁸⁰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936.

⁸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쿄 공청회 - 2013년 8월 29일 오전 세션.

⁸²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953-956.

⁸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쿄 공청회 - 2013년 8월 29일 오전 세션.

4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납치에 관여했음을 시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료 출신 면담대상자와 만난 바 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어민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몇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무리가 납치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중략) 아오모리 근처였다. 다른 동료들은 니가타로 갔다. 그들은 일본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에 머물렀다. 홋카이도 근처 아오모리나 니가타 등의 지역에서 일본 어민이 납치됐다. (중략) 어민들은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상교육을 받거나, 간첩활동을 위한 다른 기술을 배운다.”⁸⁴

그 밖의 외국인의 납치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 프랑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국적의 여성들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카오에서 납치된 태국 여성 아노차 판초이 씨와 이탈리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유인 당한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 여성 도이나 봄베아 씨도 포함한다. 두 여성 모두 미 육군 탈영병에게 아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다.⁸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 소가 히토미 씨와 결혼하고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미 육군 탈영병 찰스 젠킨스 씨에 의하면, 1978년에 레바논 여성 4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잡혀갔다고 한다.⁸⁶ 이 중 두 명은 탈출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아내로 “제공”되었다고 한다.⁸⁷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납치하는 행위는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
43. 조사위원회는 1990년대부터 2014년 조사위원회 보고서 출간 시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보위부(이후 ‘국가보위성’ 개칭)가 중국에서 여러 명을 납치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⁸⁸ 이 중에는 중국 및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납치피해자 중 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해당국을 이탈 및/또는 대한민국까지 달아날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있었던 이들로 판단된다.⁸⁹

“지상낙원” 복송사업 관련 한인 및 일본 국민의 강제실종

44. “지상낙원” 복송사업으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⁹⁰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이었고, 일부는 일본인 배우자가 있었다.

84 KOR/00/0026

85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966 및 973.

86 상동, 문단 963-75 참조.

87 상동, 문단 1006.

88 상동, 문단 976-982.

89 상동.

90 상동, 문단 917. 한인 및 6836명의 일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한 숫자이다. 2023년 3월 7일 일본 정부 제공 정보.

이들 중 일부는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편성된 지역 출신이었고, 다른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로 편성된 지역 출신이었다.⁹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설립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⁹²는 양질의 생활 환경 및 자원과 기회 접근 보장을 약속하며 한인들이 이주하도록 설득시켰다. 일본 적십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모두 이러한 대규모 이주를 조직하는 데에 역할을 하였다.⁹³

45.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피해자들은 거짓된 약속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하도록 유인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국에 도착하자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펼쳐질 삶의 냉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일본 귀환을 허락 받지 못했다. 이들은 감시 받고, 의사소통은 검열당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들이 강제실종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⁹⁴

46.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만나본 복송사업 피해자 중에는 이시카와 마나부 씨와 이태경 씨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14세와 8세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시카와 씨: “총련은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는 것이라 했지만, 송환 얘기를 할 때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는 전부 속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강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끌고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방통행으로, 돌아올 선택지조차 없었다. 우리에게 3년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아직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⁹⁵

이 씨: “북에 도착 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지는 못했다. (중략) 우리 누이는 ‘여기는 살기 힘들다, 오지 마라’고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가 검열을 당하고, 이 때문에 아버지가 불려가 교양을 받았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북에서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⁹⁶

4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성분 제도상 “적대” 또는 “동요” 계층으로 분류되고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가혹한 생활환경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⁹⁷ 일부는 조선민주주의

91 상동. 연구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 거주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주한 한인 대다수는 38선 이남지역 출신이었다.

92 대한민국의 국립통일교육원에 의하면, “1955년 5월 결성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 단체이다.”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46315>

93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917-18.

94 상동, 문단 1011-21.

95 KOR/21/0010

96 KOR/22/0001

97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117 “[성분] 제도는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계층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가정 배경과 가족 구성원의 특정 행동을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은 크게 핵심, 동요, 적대라는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된다.”

인민공화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⁹⁸

48.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북송사업 피해자들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자신들을 등한시 해왔으며, 속임을 당하고 일본 귀환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납치피해자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는 선전에 속았다. 지상낙원, 무료교육, 무상치료라는 선전구호에 속은 것이다. (중략) 세계인권선언에는 ‘외국에 나가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⁹⁹

⁹⁸ KOR/16/0042

⁹⁹ KOR/22/0001

“두 오빠 없어지고 나서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라는
노래가 엄마의 18번 곡이 되었고
이 노래만 부르셨다.”

- 전후 납치피해자 허용호 씨와 허정수 씨의 여동생 허금자 씨

V. 강제실종이 피해자에 미친 영향

49. 다음은 강제실종자의 친인척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어려움을 살피고, 강제실종이 남성과 남아,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다룬다.

가. 정신적 피해 및 심리적 고통

50. 강제실종자와 그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오랜 세월 지속되는 고통은 이들의 안녕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정신적 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 피해자는 부친의 강제실종으로 인해 받은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납북 되신 후 내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집안이 전부 망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고, 내 인생도 거꾸로 되어버린 것 같다.”¹⁰⁰

51.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다수의 강제실종자 친인척은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후 충격, 두려움, 분노, 무력감을 느꼈다고 묘사했다.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괴로움은 불안, 식욕 부진, 자살 충동,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이상을 초래했다. 가족들 중 일부는 이러한 증상이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평생 남을 것이라고 했다. 강제실종자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하는 이의 생사나 소재를 영영 알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강제실종자의 가족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오빠 납북 당시에 어머니도 놀라서 많이 우셨고, 아버지는 정신이 나갔다. 매일 울고, 술 [을 마셨다]. 아버지는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해서 정신이 나가셨다. (중략) 밥 대신 술을 드셨다. (중략) 죽기 전에 아들 한 번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다.”¹⁰¹

“오빠들 이야기를 하려면 살을 꼬집어 내는 것 같아서 힘들다. 잊고 살 것 같은데 그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나오고 가슴이 메인다. 두 형제가 한꺼번에 없어져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다. 그걸 보며 자란 우리는 부모님 생각에 역장이 무너진다. 자식을 잃은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을 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자식을 돌이나 떠나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람 몸골이 아니었다.”¹⁰²

100 KOR/22/0002

101 KOR/21/0050

102 KOR/22/0026

52.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국가가 강제실종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시정조치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는 금전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적, 정신적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한다. 국가는 이러한 필요를 보살필 의무가 있다.”¹⁰³ 피해자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이후로 남편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 (중략) 남편이 꿈에 나온 후에는 몸이 좋지 않다. (중략) 꿈에 남편이 나타난 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이곳 저곳 아프다. (중략) 병원 진단에 의하면 특별한 병은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 (중략)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지원을 받은 적은 없다.”¹⁰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병원비라도 넉넉히 주고, 생활이 되게끔 돈을 주면 좋겠다.”¹⁰⁵

53. 부모의 강제실종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위반한다.¹⁰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부모의 강제실종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중 많은 피해자는 납치된 부모를 그리워했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했다.

“아버지가 납북된 후 나는 병이 나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고 자랐다.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곡기를 끊을 정도였다. 배나 빵도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다. 아버지 납북 이후부터 6학년이 될 때까지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었다.”¹⁰⁷

“나는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진 것이라 어려웠고 방황도 했다. (중략) 주경야독하고 죽도록 고생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어찌어찌 하느님 은혜로 살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¹⁰⁸

54. 이탈리아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실종된 가족의 삶과 비교하며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면담대상자 두 명의 가족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제나 [실종된] 아들 생각이 난다. 매일 생각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식당을 하면 바쁘게 되니까 생각을 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버

¹⁰³ A/HRC/22/45, 문단 5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제19조는 실종자 및 실종자 가족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¹⁰⁴ KOR/21/0045

¹⁰⁵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¹⁰⁶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년 9월 2일 발효.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가족관계를 보존할 권리에 관한 제8조,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제9조,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신청을 신속하게 취급해야 하는 당사국 의무에 관한 제10조 참조.

¹⁰⁷ KOR/22/0002

¹⁰⁸ KOR/21/0055

리는 것을 보면, '내 아들은 얼마나 배고프고, 시달리며,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까'라는 생각에 나는 한 순간 순간이 엄마로서 많이 힘들다."¹⁰⁹

“나는 심리적으로 고통 받았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오빠 생각을 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운다. 여기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이 나아질수록, 오빠를 생각하는 일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¹¹⁰

55. 강제실종자의 가족이 심리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는 점은 모두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¹¹¹ 몇몇 가족들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지원은 부재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접근 방법을 알지 못했고, 때문에 수년간 소외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남편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니 벽에 큰 바위덩어리가 들어와 있어 내 앞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6개월 넘게 안방에 바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8개월만에 일어난 것 같다.”¹¹²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남편 납북 당시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태어난 후 몇달 본 것으로는 기억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 아들이 “다른 집에는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라고 하길래, 아빠는 돈을 벌러 갔다고,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것이라고 대답해줬다. “다른 아빠들은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사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오지 않지,”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났다. 나이 든 후에는 아버지가 납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찾지 않았다.”¹¹³

“10년 동안 엄청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는다.”¹¹⁴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움을 무척이나 표현하셨다.”¹¹⁵

109 KOR/18/0033

110 KOR/21/0029

111 범치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제6원칙 (d)항 및 제14원칙, “피해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는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학적, 사회적 지원을 정부, 자원봉사, 공동체기반 및 토착 수단을 통해 받아야 한다.”; 실종자 수색에 관한 이행원칙, 제6원칙의 1, “권한 있는 당국이 누군가의 실종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지하거나 징후를 포착할 경우 즉각 신속한 수색을 개시해야 한다 (중략);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 “누군가 강제실종을 당했다는 정보 또는 관련하여 정당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강제실종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이들이 권한 있고 독립적인 국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당국이 이를 신속하고,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제실종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국가는 정식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당국에 이를 즉각 회부해야 한다. 수사를 축소하거나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강제실종 행위 피해자 및 이들 가족은 배상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정조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 강제실종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들의 피부양자 또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4조 제2항, “모든 피해자는 강제실종의 정황,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그리고 실종자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각 당사국은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2 KOR/22/0024

113 KOR/21/0047

114 KOR/21/0040

115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아버지가 납치를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복에 강제 억류가 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가족의 행복은 무참히 깨졌고,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까지도 삼켜먹었다. 자식을 잃은 노모는 주검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고, 남편을 잃은 아내는 세상에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정신병과 강박증을 가져야 했고, 자녀들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불안한 정서와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만 했다.”¹¹⁶

“시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아들이 오는 것 같다며, 나가 보자고 하기도 했다.”¹¹⁷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납북 피해 발생과 지속은 그 이유도 소재도 전혀 모르는 만큼, 수십 년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모든 가족이 겪어왔다.”¹¹⁸

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미친 영향

- 56.** 강제실종은 강제실종자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¹⁹ 대한민국 사례의 경우, 강제실종자 대부분은 남성이다.¹²⁰ 전통적으로 주된 소득자 역할을 했던 가정의 도움 없이 여성은 감시와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오롯이 책임져야 했다.¹²¹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여성이 짊어진 부담에 대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술했다.

“남편 납북 이후 돈이 없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녀도 어렸고, 여자가 돈 벌 방도가 없어 끼니를 굶었다. (중략) 당시 쌀이 아닌 노란 좁쌀을 사다 끓여서 마셨고 쌀밥은 먹지 못했다.”¹²²

“아버지 납치 되시고 집안 기둥이 없어져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중략) 어머니는 바느질 품삤으로 돈을 버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다.”¹²³

- 57.** 강제실종은 아동에게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²⁴ 피해자 가족이 겪는 가난과 차별로 인해 아동의 안녕과 교육이 위태로워진다. 여아, 특히 손위인 딸의 경우 교육을 포기하고 가

¹¹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¹¹⁷ KOR/21/0047

¹¹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¹¹⁹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 강제적·비자발적 실종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연구, A/HRC/30/38/Add.5.

¹²⁰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1004.

¹²¹ 상동.

¹²² KOR/21/0045

¹²³ KOR/21/0036

¹²⁴ 강제실종에 의해 영향 받은 여성에 관한 일반논평, A/HRC/WGEID/98/2; 아동과 강제실종에 관한 일반논평, A/HRC/WGEID/98/1/Corr.1.

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더욱 많이 안았다. 면담대상자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큰딸이었고 15살 때부터 가장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이 되었다. 나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로 형제가 둘 있었다.”¹²⁵

“부친이 사고 당한 후, 형제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동생들 중 학업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다. 막내동생이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식사로 제공하던 시절이라, 막내동생은 초등학교 졸업은 했다.”¹²⁶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강제실종 당한 이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도 차별을 겪었다. 이들은 가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의심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척 당하고 낙인이 찍혔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했다. 피해자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했다. 신원조회 때문에 좋은 회사에 취직 못한 것이다. (중략) 나도 식당에 취직하려고 했으나, 간첩 여편네라며 나를 고용하지 않았다.”¹²⁷

“우리는 연좌제로 피해를 입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동생도 연좌제로 인해 외국 가는 배를 (중략) 타지 못했다. (중략) 나는 연좌제로 인해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다.”¹²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남편이 그렇게 납치되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후에는 살아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아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 뿐이었다. 아들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8살이었으며, 딸은 중학생으로 12살이었다.”¹²⁹

“아버지 납북 후 가장이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가 한복 만드는 기술이 있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한복을 만들었다. 천을 받아 재단해서 한복을 수선했고, 뜨개질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¹³⁰

“가족 중에 가장 기둥이 사라지고 나니, 그 아래 사람들은 교육면에서나 의식주 모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 자식들도 고통을 받았다. 당시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

125 KOR/22/0025

126 KOR/21/0049

127 KOR/21/0048

128 KOR/21/0050

129 KOR/22/0024

130 KOR/22/0002

서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¹³¹

“당시 어머니도 젊은 나이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혼자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심지어 고물을 훔쳐서 고물상에 팔고 국수 하나를 받아와 다섯 식구 가족들이 하루 세 끼를 그것만 먹었던 적도 있었다. 정부에서 주는 무궁화 밀가루 한 포대로 먹고 살았다. 먹을 것이 너무 없었다. 우리는 속초에서 한 달에 3000원 하는 방에 살았다. 나와 형제들은 집안이 너무 어려워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서울에 와서 짜장면을 배달하면 숙식 제공을 해주니 그러고 살았다. 옛날에는 이것이 부끄러웠으나 이제는 부끄럽지 않다.”¹³²

“아버지 납치되고 우리 형제들은 먹을 것이 없어 담배, 파배기,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봤고 어머니는 과일, 생선 장사를 하셨다. 형제들이 전부 뛰어나니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신문팔이도 하고, 땅콩 장사, 구두닦이, 세차 등도 했다.”¹³³

“내 동생들은 버스터미널에서 껌이나 라이터를 팔고 다녔다.”¹³⁴

“나는 아들을 낳고 8개월 만에 납북되었다. 나의 배우자가 남에서 1남 3녀를 혼자 키웠다. 아내는 리어카를 끌기도 하고, 고기[생선] 장사도 하고 못 해본 일이 없었다. 우리는 가정적으로 피해가 많았다.”¹³⁵

“[내가] 없어진 다음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우리 아들이 지금도 국수를 안 먹는다. 우리 할머니 하루 벌어서 함지에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기장사도 하지, 연탄 팔러 다니지, 벽돌 공장에서 벽돌 만드는 일하지 등등 대한민국에서 우리 할머니 못 해본 일이 없다. 그 때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들이 국수를 안 먹는다. 학교도 생활이 어려워서 다 고등학교만 보내고 대학을 못 보냈다.”¹³⁶

“딸은 남편 납북 후,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¹³⁷

“이후 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지만 집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했다. 당시 어머니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콩나물을 팔면 3000원이 남았다. 나는 얼음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¹³⁸

과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한 친인척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아버지가 ‘괴뢰군’이므로 우리도 자라면서 당이나 조직 앞에서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게 되는 제한을 가졌다.”¹³⁹

131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132 상동.

133 KOR/21/0038

134 KOR/21/0035

135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136 KOR/22/0023

137 KOR/21/0048

138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139 2022년 9월 6일 국군포로 가족 간담회 기록.

“북에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하기 힘들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남자들은 직업의 선택권이 전혀 없이, 아버지를 따라 굴[탄광] 안에 들어가야 했다. 나의 아버지는 굴[탄광]에서 42년간 해를 못 보고 살았다.”¹⁴⁰

“사회에 나와서도 남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직업도 가지지 못했다. 탄광 말고는 다른 곳에 보내주지 않아서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들어가서 일했다. 딸들은 출가하여 시집 가면 탄광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들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¹⁴¹

“나는 아버지와 함경북도 회령군 학포 탄광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42년 동안 일했고, 나도 학교를 17살에 졸업한 이후로 32년간 탄광에서 일했다.”¹⁴²

다. 강제실종자 소재 확인 및 배상과 관련하여 친인척이 겪은 어려움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종자를 찾는 일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이 실종자와의 관계로 인해 위협, 보복, 실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대상자들이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전하기를, 실종된 남성의 부인은 원치 않더라도 남편과 이혼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연좌제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다고 한다.

“법을 어기면, 가족 전체가 처벌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불법 영화를 보다 걸렸다면, 아이의 아버지는 해고 당하거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 (중략) 이 가족들이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들은 적은 없다. (중략) 가해자의 아내는 이혼을 통해 빠져나올 수는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왠지 이혼이 자동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자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¹⁴³

“오빠는 강제로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을 떠나야 했다. 북은 보통 가족 전체를 관리소에 보내거나, 이혼을 강요하고 범죄자만 보낸다. 오빠의 아내가 말하기를, 오빠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관리들이 집에 들어와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을 전부 가져갔다고 한다.”¹⁴⁴

60. 과거 대한민국 정부 시절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감시와 괴롭힘을 당했고, 일부 경우에는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한 자의적 구금을 당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¹⁴⁵ 면담대

140 상동.

141 상동.

142 상동.

143 KOR/17/0022

144 KOR/21/0029

145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907-8: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통치기(1963-1988년) 중 납북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강제실종된 이들의 친인척은 감시를 당했고, 국가 교육기관 및 고용에 제한을 받았으며, 좌파 월북자들과 관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급을 받았다. (중략)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강제실종된 이들의 친인척을 감시하던 대한민국의 정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상자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실종자가 간첩이 되어 돌아와 가족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집은 항상 경찰관의 감시를 받았다. 밤에는 우리 집 근처를 돌아다녔고, 우리 마루 밑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엿들었다. 우리 집을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지켜봤다. 당시 친척들도 엮여 있었다. 한 집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 친척까지 모두 그런 취급을 당했다.”¹⁴⁶

“우리 큰형은 동네에 간첩 사건이 생겼다 하면 첫번째로 잡혀 들어갔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 납북 후 간첩으로 파견된] 동생을 만났냐, 안 만났냐 물어보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만 두드려 패고 교도소까지 보냈다. (중략) 노태우 대통령 정권 당시부터 분위기가 조금 풀려서, 향의도 하고, 재심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보상도 있었다. 큰형도 재심을 하여 보상금액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나, 반긴 받았던 것 같고 명예도 회복된 것 같다.”¹⁴⁷

61. 대한민국은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를 (또는 이들의 가족을)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했다.¹⁴⁸
62. 일본 국민 중 일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납치되었으나 이들의 가족이 실종자들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요코타 사키에 씨는 1977년 사라진 딸 요코타 메구미 씨를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또한 딸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요코타 사키에 씨는 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치 연기처럼 갑자기 딸이 사라진 후, 20년이 지났다. 정말 오랫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중략) 하지만 1997년에 처음으로 소재가 파악되면서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다.”¹⁴⁹

63.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17명의 가족 외에도 친인척이 납치되었다고 믿는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정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 871명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실종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송사업 피해자들은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해, 납치로 인정 받은 피해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기를 기대한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강조했다. 2000년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한 북송사업 피해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46 KOR/21/0046

147 상동.

14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제10조.

1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쿄 공청회 - 2013년 8월 29일 오전 세션.



2020년 3월 일본 고베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거나 구제하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간 일본인 아내들이나 재일교포들은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가 아니라며 충분히 노력해주시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로 간 것과, 속아서 간 것은 다르다. 속았던 사람들이 원해서 속은 것이 아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원해서 납치 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북송사업[피해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¹⁵⁰

라. 오랜 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 및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에 미친 영향

64. 강제실종은 본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⁵¹ 강제실종자의 친인척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는 매우 고통이며, 실종자의 친인척 다수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는 강제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재결합을 추진하는 등 가족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담대상자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편은 이제 나이가 많아, 77세가 되었을 것이다. 살아 계신다면 좋겠지만, 복이 워낙 어려워오니 살아 계셔도 고통이겠다 생각한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탈북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중략) 어느 날 아침,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환상, 꿈을 가지고 잠에 든다.”¹⁵²

¹⁵⁰ KOR/21/0010

¹⁵¹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7조. 더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강제실종에 의해 영향 받은 여성에 관한 일반논평, A/HRC/WGEID/98/2, 문단 5 및 12 참조.

¹⁵² KOR/21/0055



2012년 6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가족들이 피해자들 사진 앞에 헌화하고 있다.

“남편은 8형제 중 넷째 또는 다섯째였다. 남편의 형제들 중 막내가 올해 83세인데, 현재 그 막내 한 명만 살아있다. (중략) 남편이 살아있다면 90세일텐데,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략) 남편의 생사확인이라도 하고 싶다. 지금은 다른 것보다 생사확인이 우선이다.”¹⁵³

65. 일본의 경우, 납치피해자 및 가족들도 고령이다. 요코타 메구미¹⁵⁴ 씨의 부친인 요코타 시게루 씨와 아리모토 게이코¹⁵⁵ 씨의 모친 아리모토 가요코 씨는 각각 87세와 94세로 2020년에 사망했다.¹⁵⁶ 이들은 납치된 자녀의 생사를 영영 모른 채 수십 년간 기다림을 이어갔다. 일본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 2002년 9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구출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고령의 부모 세대 중 여러 분이 타계하셔서 납치된 가족이나 형제들과 재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¹⁵⁷

¹⁵³ KOR/21/0048

¹⁵⁴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납치 당시 13세였다. 일본 니가타 시에서 하교하는 길에 납치되었다.

¹⁵⁵ 아리모토 게이코 씨는 1983년 7월 유럽에서 실종될 당시 23세였다.

¹⁵⁶ 아리모토 가요코 씨의 사망 및 납치 문제에 관한 2020년 2월 6일 기자회견, https://japan.kantei.go.jp/98_abe/actions/202002/_00011.html; 요코타 시게루 씨 사망에 관한 2020년 6월 5일 총리 기자회견, https://japan.kantei.go.jp/98_abe/actions/202006/_00008.html

¹⁵⁷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당사자도 남겨진 가족도 이미 고령이 되는 사람이 많고, 부모형제도 이미 타계한 사람도 많다. 피해자를 계속 기다리는 체력의 불안이나, 자신의 사망 후에 누가 피해자 구출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그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¹⁵⁸

“내 또래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돌아가신 분도 많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많다. 예전처럼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많이 못한다. 가족모임을 하면, 납북피해자들의 딸, 사위, 조카 등이 참석한다. 직계 가족은 모두 몸이 좋지 않거나, 돌아가셨다.”¹⁵⁹

“나이가 드니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립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 더욱 그렇다. 남편은 자기가 처자식한테 잘해줄 일만 남았다고 했었다.”¹⁶⁰

“어머님이 70세 되실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 어머님이 아버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납북 당시 아버지가 42세였다.”¹⁶¹

158 상동.

159 KOR/21/0048

160 KOR/22/0024

161 KOR/21/0034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버지를 천년만년 기다린다.”

- 전시 납치피해자 최준 씨의 아들 최광석 씨(89세)

VI. 강제실종으로 인해 겪은 침해에 대한 진실, 책임 규명을 비롯한 정의, 배상에 관한 피해자 견해

66. 이번 장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포함한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답변 중, 진실, 책임 규명을 비롯한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기대를 살핀다.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에 대한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도외시되었다고 느끼는 피해자들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가능한 경우 면담대상자들에게 사법적 및 비사법적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면담대상자는 모든 시정조치가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반드시 공동의 노력과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8월 개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모습

가. 강제실종자 생사 및 소재 확인

67.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게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와 소재에 관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는데, 가령 한 면담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 생사확인이 최우선 순위이다.”¹⁶²

“남편이 무소식인 점이 가장 힘들다. 소식을 듣고 싶다. 굶고 계시는지 잡숫고 계시는지 소식만이라도 조금 알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소식만 조금 알아도 마음이라도 조금 위안이 되겠는데 전혀 무소식이다.”¹⁶³

68. 강제실종자 가족 중 다수는 친인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여전히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었다. 특히 반세기 전 누군가를 잃은 가족의 경우 더욱 그렇다. 피해자 중 몇몇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전한 바에 의하면, 문화적 중요성을 띠는 장례 의식을 정확한 날짜에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 가족의 사망일자라도 알고 싶다고 했다. 여러 피해자 단체는 매년 서로를 위로하고 실종된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가족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아 계셨는지 알고 싶다. 양력 4월 16일 [납치 일자] 기준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제사 모신 지는 꽤 되었다. 살아 계시겠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식 된 도리로 그냥 두기는 뭣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¹⁶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아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¹⁶⁵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앞서 전후 납치피해자 흥건표 씨와 이민교 씨의 생사확인을 의뢰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확인불가능’이라고 통지했다.

의회서번호 60

이름 김순애 성별 여자 나이 74

찾은점형

No	본인과인 관계	이름	성별	나이	생시여부	비고
1	아들	흥건표	남	46	확인불가능	

의회서번호 59

이름 김태욱 성별 여자 나이 81

찾은점형

No	본인과인 관계	이름	성별	나이	생시여부	비고
1	자녀	이민교	남	55	확인불가능	

162 KOR/22/0002

163 KOR/21/0034

164 KOR/21/0049

165 KOR/17/0110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만이라도 알고 싶은데, 아무래도 돌아가셨을 것 같다. 아들로써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¹⁶⁶

“지금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다. ‘살아계시겠지’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남편의 생사를 알기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¹⁶⁷

“납북 피해로 생긴 상처들은 가족의 생사가 확인된다면 치유 될 수 있을 것이다.”¹⁶⁸

“남편이 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북에 있다는 것만 알고, 생사도 모른다.”¹⁶⁹

“나의 아버지에 대해 가장 원하는 것은 생사확인이 가장 먼저다. 기록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북에서는 항상 없다고 대답한다. 첫째는 생사확인이다. (중략) 아버지 산소를 만들었다. 시신이 없는 무덤이다. 납골함에 유골은 없고, 위패만 넣어 놓았다.”¹⁷⁰

“동생이 이미 사망했다고 하니, 동생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얼마나 노동을 시켰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다. 집에서 순수하게 병으로 사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동생의 자녀들에 대해 걱정도 된다.”¹⁷¹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다. 아버지 소식을 좀 알고 싶어 통일될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¹⁷²

“북에 일가친척을 두고 온 분들이 많기에 그 분들의 생사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나아가서 자유왕래가 실현되면 나머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자연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¹⁷³

나. 강제실종자의 즉각 송환, 상봉 및 연락 재개

69.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가족들은 강제실종 된 친인척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 순위이자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특히 대부분의 친인척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사랑하는 이의 귀환만을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라 강제실종자와 연락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166 KOR/17/0109

167 KOR/21/0055

168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169 KOR/21/0047

170 KOR/21/0036

171 KOR/22/0022

172 KOR/21/0038

173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국제사회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송환을 북 당국에게 요구한다.”¹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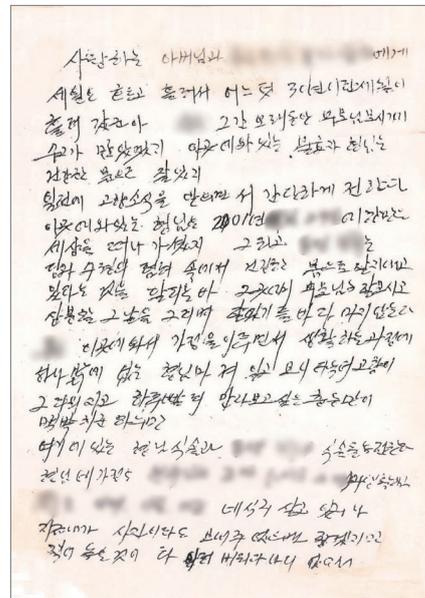
“오빠와 편지라도 주고 받으면 좋겠다.”¹⁷⁵

70.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소수의 가족 중 일부는 상봉행사가 짧게 끝났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표했다.¹⁷⁶ 또한 상봉행사 기간 동안 가족과의 소통이 감시 당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참석한 친인척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실종된 친인척의 생사확인을 요청한 가족은 많지만, 해당국 정부는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가족들은 가족과 재회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통일 뿐이라고 보는 이들도 본격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가족과 이산된 이들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산가족 신청 당시에는, 북에서 아버지 생사확인이 어렵다고 얘기했다.”¹⁷⁷

“세월은 흘러가고 늙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다. [가족을]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전화라도 하고, 기차가 개통되면 반드시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 어디 사는지 알고 지내면 된다. 서로 남북으로 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락만 되어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중략) 지금이라도 대화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 되기를 원한다.”¹⁷⁸

전후 납치피해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의 가족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



174 상동.

175 KOR/21/0050

176 2000년 이후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 60개 가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했다. 이는 상봉행사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던 18명의 국군포로와 19명의 전후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2022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통일부 제공 정보.

177 KOR/21/0034

178 KOR/21/0046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족의 안전한 귀환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실종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이 문제만 풀리면 강제실종 문제는 풀리니까 말이다.”¹⁷⁹

“동생의 납북에 대해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동생과 연락하고, 예전에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⁸⁰

“납치된 모든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이 북 당국의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일본에 귀국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여러 명이 부분적 및 단계적으로 귀국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¹⁸¹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군포로 가족의 안전한 귀환이다.”¹⁸²

“지상낙원[복송사업] 피해자들과 납북자들 모두 일본과 북을 자유롭게 오갔으면 좋겠다. (중략) 이동의 자유가 내 목표이기는 하나, 더 크게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¹⁸³

“빨리 통일 되는 것 외에는 큰아들이 올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¹⁸⁴

다. 유해 송환

71. 강제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유해가 송환되어야 한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강조했다.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에는 무조건 남편의 생사확인이라도 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만약 남편이 이미 죽고 없다면, 유골이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닌가.”¹⁸⁵

“나는 아버지가 북에서 이미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위치라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내게 돌려줘야 한다. (중략)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의 한이다. 아버지 유해를 찾아와야 어머니 묘소 옆에 같이 모셔드릴 수가 있다.”¹⁸⁶

72. 몇몇 피해자는 특정 국가들과 국제공동체가 6.25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실종자 소재를 파악하고 국군포로 유해 발굴 사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79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180 KOR/21/0046

181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182 상동.

183 KOR/21/0010

184 KOR/21/0040

185 KOR/21/0048

186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유엔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유엔에게도 국군포로 문제에 책임이 있다. 정전 협정에 책임이 있는 것은 유엔, 소련, 중국, 북이다. (중략)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가 유해를 모셔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중략) 유해는 다 국경지대에 있다.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야 유해를 모셔올 수 있[다].”¹⁸⁷

“유해를 모셔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해를 모셔오지 못한 가족들은 그것이 한이 [된다].”¹⁸⁸

라. 사과, 인정 및 기억화

73. 강제실종자의 친인척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강제실종에 대해 해당국의 진실된 사과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사과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명백히 인정해주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복송사업 피해자들은 해당 사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면담대상자들은 사과를 받더라도 고통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진실되고 공개적인 사과가 그들이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오명을 벗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¹⁸⁹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가족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리라 생각한다.”¹⁹⁰

7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가족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느낌 때문에 좌절감을 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오랜 고통을 인정받기 위해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략) 우리 가족과 피해자들도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¹⁹¹

“북에 의한 인권 침해가 두 번 다시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형태 있는 증거물로 남김과 동시에 (중략) 버드나무 거리가 있고, 복송사업 자료관이 있고, 비가 있어서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오르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부할 때 니가타로 견학도 오고,

187 2022년 9월 6일 국군포로 가족 간담회 기록.

188 상동.

189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190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191 KOR/21/0029



2021년 12월 일본 니가타 항구에서 열린 북송사업 피해자 추모식

수학여행 코스가 되게 하여 니가타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 하고 있다.”¹⁹²

75. 일본 정부는 소책자와 포스터 배부, 영화 상영, 워크숍과 기타 교육행사 인력 파견, 교사, 교사 지망생 및 기타 대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 수필대회 등을 통해 납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¹⁹³ 대한민국의 경우, 진상규명위원회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등 전시 납치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다.¹⁹⁴

마. 재발 방지 보장

76.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강제실종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얘기했다. 또한 향후에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고, 책임 규명을 향한 유의미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¹⁹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에서 인권이 보장되게 되면 과거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 규명, 그에 따르는 보상,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⁹⁶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전쟁 한 번으로 우리 가족이 찢어지고 내가

¹⁹²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¹⁹³ 2022년 10월 21일 일본 정부 제공 정보.

¹⁹⁴ 2023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영문), 2017.

¹⁹⁵ KOR/17/0104

¹⁹⁶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고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았다.”¹⁹⁷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지 소식을 아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과를 받는 것이다.”¹⁹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총련] 당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¹⁹⁹

“[정의란] 북 정권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납북 후 소식을 사실 그대로 진실되게 전해주고, 사망하였다면 유해를 그 가족에게 송환하고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⁰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이 제일 먼저 되어야 책임 규명도 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²⁰¹

바.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

7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강제실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사 소추의 억지 효과와 인식 제고 효과를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은이 통제하는 지도부와 보위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관리소에 사람들을 보낸다. 때문에 김정은과 지도부가 가해자이며, 처벌 받아야 한다. 오빠를 고문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²⁰²

“북 인권과 가족의 실종에 대한 책임은 북 최고 권력자에게 있다. 최고 권력자는 몇십 년에 걸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²⁰³

78. 여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강제실종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몇몇 피해자는 형사 소추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책임 규명 조치를 위해 관련

197 KOR/17/0110

198 KOR/21/0035

199 KOR/21/0028

200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201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202 KOR/21/0029

203 KOR/18/0033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조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더하여 피해자들은 다른 회원국이 소추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형사책임, 피해 보상, 진실규명 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북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중략) 혹시나 북이 무너졌을 때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준비를 했다가 책임 규명을 하는 것과 준비 없이 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²⁰⁴

79.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향후 소송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피해자 대다수는 피해자로서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가능한 법적 책임 규명 방안이나 사법 접근 방법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했다.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법적 시정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가의 법적 지원, 언어 통번역 지원, 옹호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 피해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는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²⁰⁵

“법적인 조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법조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 법적으로 무엇을 하기가 힘들다. 법적인 것은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납북 문제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면 좋겠다.”²⁰⁶

“강제 복송에 대한 책임 규명은 거짓 선전에 의해 받았던 심리적 고통과 철창 없는 감옥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살아온 우리 회원들과 가족들의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²⁰⁷

“정의와 책임 규명은 [과거 국군포로였던] 구성원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그들의 가족과 조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냈다. 하지만 북에서는 국군포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강제 억류 및 노역을 시켰고,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²⁰⁸

“우리는 법적 지식도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²⁰⁹

204 상동.

205 KOR/22/0025

206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207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208 상동.

209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사. 보상

80.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 재활, 원상회복, 만족 등을 비롯한 포괄적 배상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친인척이 실종된 후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금전적 보상과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하나의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강제실종이 여성과 아동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오랜 세월 고통받은 것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강제로 북으로 데려가서 한 사람의 운명을 강제로 끌어다 짓밟아 놓았다. 부모 친척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끝내 만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이 마음을 대변해서 남측 정부가 북측 정부에 시원하게 말로라도 추궁하고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겠다.”²¹⁰

“납북자 가족치고 잘 사는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이 없는 가족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님도 연로하시고, 아픈 여동생도 살아야 하기에, 물질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다.”²¹¹

81. 몇몇 피해자는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동기가 금액 때문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했다. 다만, 민사소송은 이들이 고통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납북피해자 가족이 승소한 판결이 있는데 (중략)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 은과 북 정권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²¹²

“북에 책임을 물을 기회가 생기거나 나중에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생긴다면, 재판을 해서 보상 받기를 바란다. (중략) 몇십 년 평생을 부모 형제가 생이별하고 못 만난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방법은 보상 말고는 없을 것 같다.”²¹³

82.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국민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실종자의 가족들은 대한민국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 수년간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²¹⁰ KOR/21/0033

²¹¹ KOR/21/0034

²¹² KOR/21/0036

²¹³ KOR/21/0050

“대한민국 정부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납북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 못했다. 국민을 보호하지도 않고 인권을 보호하지도 않았다. (중략) 정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나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¹⁴

“이런 명예회복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심지어 납북된 것이 납치가 아니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다.”²¹⁵

- 83.** 2000년 이후, 전후 납치피해자 및 전시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절차를 개시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피해자를 위한 시정조치 마련을 목적으로 가족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피해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²¹⁶
- 84.**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송환된 국군포로에게 평균 5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공했다.²¹⁷ 또한 해당 법에 따라 국군포로 가족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간 이들에게 가구당 479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²¹⁸ 더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단 보상 조치로 전시 납치피해자 가족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했다.²¹⁹
- 85.**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기간이 최소 3년이며 이후 대한민국에 귀환한 이들의 재정착 및 주거를 지원했다.²²⁰ 납치된 기간이 최소 3년인 납치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되었다.²²¹ 납치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는 세 건에 대해 보상 및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다.²²² 정착 지원금, 위로금, 보상 및 의료지원금으로 총 152억 원이 438건에 대해 지급되었다.²²³ 아울러 대한민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되어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 반공법²²⁴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 받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재심이 진행되었다. 2022년 기준 8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²²⁵ 해당 88명 중 68명이 형사보상을 지

²¹⁴ KOR/22/0025

²¹⁵ 2022년 8월 18일 전후 납치피해자 가족 간담회 기록.

²¹⁶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00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²¹⁷ 2023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제공 정보.

²¹⁸ 상동.

²¹⁹ 상동.

²²⁰ 상동.

²²¹ 상동.

²²² 상동.

²²³ 상동.

²²⁴ 상동. 반공법(1961).

²²⁵ 본인에 의한 청구는 73건, 검찰 직권 청구는 15건이었다. 2023년 1월 16일 대한민국 법무부 제공 정보.

급 받고, 43명은 소송 후 국가배상을 지급 받았다.²²⁶

86. 비록 법률체계상 한계가 존재하나,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강제실종 피해자가 인정받았다는 점을 환영했다. 다만 전후 납치피해자에게 제공된 금전적 지원은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 지칭되었고, 전시 납치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보상금 지급은 없었다.²²⁷ 피해자들은 법률체계상 현재 마련된 피해자 지원책에 실망감을 표했다. 여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액수에 비해 금전적 보상 액수가 적다고 느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배상의 범위가 충분치 못하다고 여겼고, 침해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기록 또는 국가 공무원의 진술을 필요로 하는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증거 기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로금 조금 받았을 뿐이다. (중략)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돈이다.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받다 보니 도움 되지 않았다.”²²⁸

“다른 사건과 공평하게 보상 받으면 마음이 조금 회복될 것 같다. 그런데 보상은 전혀 없다.”²²⁹

87. 일본 정부는 2002년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납치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본에 귀국한 피해자 및 이들의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²³⁰

아. 책임 규명 모색을 위한 노력

88. 조사위원회는 국제공동체가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²³¹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사법적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몇몇 시민사회단체는 전시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커뮤니케이션을 제출한 바 있다. 전시 납치피해자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표하여 제출됐던 커뮤니케이션이 2015년과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재판소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는 이유였다.²³² 2018년과 2019년, 17명의 일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들을

²²⁶ 2023년 1월 16일 대한민국 법무부 제공 정보.

²²⁷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제9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²²⁸ KOR/21/0055

²²⁹ KOR/21/0045

²³⁰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2002).

²³¹ 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 문단 1218.

²³²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가 송부한 2015년 8월 25일자 및 2019년 7월 22일자 서한.

대표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된 커뮤니케이션도 동일하게 관할권을 근거로 기각되었다.²³³

-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나 비사법적 책임 규명 방안 등 기타 책임 규명 방안도 모색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국군포로 및 전시 납치피해자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수 건이 제기되었다.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잡혀 50년간 강제노동을 수행한 두 명의 국군포로는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이들에게 각각 미화 1만7600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²³⁴ 2020년 9월에는 다섯 명의 과거 국군포로가 동일한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 전시 납치피해자의 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법원은 미화 4만2000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²³⁵ 2020년에 전시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추가로 소송 두 건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2년 이 중 한 건에 대해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²³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보상을 지급받는 일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 90.** 일본의 경우, 복송사업 피해자 다섯 명이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2022년 3월, 공소시효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²³⁷ 다만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총련과 함께 또는 이들을 통해 재정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소는 원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떠난 이유가 총련의 거짓된 홍보 캠페인으로 인해 해당국의 상황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진전은 없었으나, 원고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²³⁸
- 91.** 일본의 피해자 단체들은 비사법적 책임 규명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 2004년과 2012년, 납치가 가능성이 있는 24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 구제 신청을 했고,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²³⁹ 2015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복송사업 피해자 11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일본 정부, 총련, 일본 적십자사를 상대로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²⁴⁰

²³³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가 송부한 2018년 4월 4일자 및 2019년 2월 6일자 서한.

²³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06.

²³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6603.

²³⁶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2804. 사건 한 개는 계류 중이다.

²³⁷ 도쿄지방법원 2022년 3월 22일 판결. (2018 (와) 26750).

²³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후쿠다 켄지, 2021년 12월 8일 개최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워크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책임 규명 방안 탐색'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복송사업 소송 관련 내용.

²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료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강제실종자의 일본인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에 제출한 커뮤니케이션, 2018년 1월 24일, 문단 4, 16, 17.

²⁴⁰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사법기구가 아니냐, 진정 내용을 조사하고 결론을 보고할 수 있다. 도이 가나에, 디플로매트, '지상낙원'은 없다: 일본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 2015년 9월 22일. <https://thediplomat.com/2015/09/no-paradise-on-earth-why-japan-should-right-a-historic-wrong/>

92. 미국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대 민사소송은 잠재적인 법적 책임 규명 방안이 되었다. 미국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 예를 들어 푸에블로호에 탑승한 미국 승조원의 "1968년 나포, 감금, 고문"에 대한 2008년과 2021년 판결²⁴¹ 및 김동식 목사의 "납치 및 고문·살해(추정)"에 대한 2015년 판결²⁴² 등이 있다.
93. 시민사회단체 및 강제실종자의 친인척들은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에 강제실종 사건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에서의 [특별 절차를 통한] 강제실종 청원 창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창구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르고 있다. (중략) 북에 아직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강제실종자에 이은 2차 피해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족들은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청원을 포기한다. 그러나 남아 있는 가족들이 없을 경우, 즉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청원에 임한다. 후자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증언을 마친 후 심리적 안정감이 들었다고 반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⁴³

94.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53명의 여성을 포함한 362개의 실종 사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사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공한 바 없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피해자의 생사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협력 부재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²⁴⁴

²⁴¹ *Doe v. DP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사건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2021) 414 F.Supp.3d 109 및 *Massie v. Gov't of the DPRK* 사건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2008) 592 F.Supp.2d 57.

²⁴² *Han Kim v. DPRK* 사건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 2015) 87 F. Supp 3d 286.

²⁴³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질문지에 대한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답변.

²⁴⁴ A/HRC/51/31, 문단 53.

Ⅶ. 결론

95.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50년부터 국가 방침으로 강제실종에 관여해왔다는 조사위원회의 2014년 결론을 뒷받침한다.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인권 침해를 견뎌왔다.
96. 강제실종자의 친인척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 및 소재에 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실현되고, 가족이 즉각 귀환하거나 유해가 송환되며, 가족 이산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 수립 등의 구제 및 시정조치에 접근하는 것이다.
97. 강제실종 행위 자체의 중대성과 더불어 해당 행위가 친인척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미치는 다양하고, 심각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보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응답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자 및 가족이 고령인 점과 강제실종 범죄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시급히 강제실종을 중단하고 기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98.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유엔 기구, 몇몇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해당국의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국내 또는 국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제실종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형사 소추 전략 및 총체적 배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9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진실, 책임 규명을 비롯한 정의 및 배상을 위해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고 증진함으로써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주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피해자의 유의미한 참여를 모색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회원국의 국내 사법제도 내의 방안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방안을 검토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Ⅷ. 권고

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사례를 비롯한 강제실종의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한다. 이는 납치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정치적 근거로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포함한다.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해당 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인권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이고 성 인지 관점을 반영한 배상 및 구제를 보장한다. 이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 및 재활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일본 및 기타 유관국과 협력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혐의 전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사를 개시하고, 강제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며, 실종자로 보고된 이들 중 사망자의 유해를 확인 및 송환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포괄적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된 외국인 전원의 명단을 발표한다.

구금자의 가족에게 구금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 위협이나 보복의 위험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구금자 및 납치피해자가 가족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없애고, 구금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이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창구를 제공한다.

국제 인권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한 방식으로 형사 사법 법률 및 사법부, 법 집행 제도, 교정 제도 등의 법치 기관 개혁에 착수한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체포된 이들의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통보하는 내용의 조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인권 제도를 모두 비준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한다. 이는 조사위원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인권 조약기구, 인권 이사회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제도의 권고 이행을 지원하는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가족 상봉행사가 정기적으로 더욱 자주 개최되고, 참여 대상자를 폭넓게 차별 없이 선정하며, 상봉행사가 감시나 사생활 침해 없이 진행되고, 참여자들이 상봉 이후에도 개입·감시·검열 없이 가능한 모든 소통 수단을 통해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 국민 중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있는 회원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강제실종자의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강제실종 피해자와 협의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시정조치 및 배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정책에 포괄적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배상은 기억화, 실종자의 소재 파악 지원, 유해의 발굴, 감식 및 피해자의 희망에 따른 재안치, 명예회복, 의료 및 심리 지원 등의 보상 및 만족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배상 조치는 강제실종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가 강제실종으로 인해 겪는 각기 다른 불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강제실종자 친인척 대상의 차별, 감시, 괴롭힘, 부당한 구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다양하고, 심각하며, 지속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취한다.

납치피해자의 친인척과 특히 여성 등의 특정 집단이 낙인 및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강제실종자 수색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 경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권리와 관련한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비준한다.

다.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유관국 간 소통을 추진하고 강제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할 때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비롯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중재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제 범죄, 특히 조사위원회가 특정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거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역외관할권 원칙을 활용한 방식을 비롯하여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고문, 강제 노동, 강제실종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이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한다.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인권이 마땅한 우선순위가 되고,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함으로써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꿈

“아버지이.....!”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우는데
꿈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달아날까 봐 끌어안고 흐느끼는데
또 꿈이다

“이건 꿈이 분명해요. 어서 꿈 밖으로 나가요.”

아버지 손을 힘껏 당겨 보지만
이 역시 꿈이다

하도 많이 속아서

이젠 꿈에 아버지를 만나도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다.

시: 최영재 씨 작 동시집 '마지막 가족사진' 중.

최영재 씨는 전시 납치피해자 최영수 씨의 아들이다.

의견 청취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명단

-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 전후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 납북자 구출 협의회
-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 북한인권시민연합
- 북한인권정보센터
- 물망초
- 북한인권증진센터
-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
- 모두모이자
- 6·25국군포로가족회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국 납북 일본인 구출협회
- 엔케이워치
- 재일교포복송연구회
- 베트남전국군포로납북자가족회
-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 Switzerland
- Telephone: +41 (0) 22 917 90 00 • Fax: +41 (0) 22 917 90 08
- Website: www.ohchr.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03188)
- 이메일: seoul@ohchr.org • 웹사이트: <https://seoul.ohchr.org>